

第4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第2號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2月22日(水) 15時40分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에 관한制定條例(案)
4. '95年度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5. 서울特別市鍾路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에 관한制定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4. '95年度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5. 서울特別市鍾路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7面

(15時40分 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鍾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에 관한制定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4. '95年度 서울特別市鍾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鍾路區廳長 提出)

(15時42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

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 羅在岩委員長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羅在岩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羅在岩입니다.

존경하는 李斗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1995년도 올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4회 임시회 제1차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시장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아동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7조 제2항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아동” 내용의 모범에 기속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효율적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대상 조례중 제16조 제3항의 유료화장실 1회 사용료로 5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요금의 현실성과 청결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50원을 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 인정과 공원시설용도의 재산증대 및 효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의 매각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잡종재산으로서의 효용성 여부확인 및 주변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제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 2. 20):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김현식)

가. 제안이유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아동위원 위촉은 각 동별로 2명씩 구청장이 위촉

○협의회는 각동 아동위원 42명으로 구성하며 연2회 정기회 개최

○협의회 기능은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교환 및 아동위원 직무에 대한 연구

○아동위원에게 연2회 수당지급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조례(안) 제3조(협의회 기능)중 1항 1호의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을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례규정은 아동복지법 제7조제2항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라고 그 담당구역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규정이 법을 기속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1회를 “아동위원의 출신동내의 담당구역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김현중위원, 박우신위원, 천상옥위원, 정창희위원, 현수한위원)

○아동협의회와 아동위원회와의 차이점은?

○아동협의회의 수당지급 방법은?

○아동의 나이는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나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방향은?

○현재 아동위원회 인원은?

○불우 청소년 선발 방법은?

○위원의 자격요건은?

○모범청소년 46명 선발구분 및 일시는?

○아동위원회 위원들이 봉사차원에서 일하는데 대책은?

○소년소녀 가장에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답변자: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

○아동협의회는 구단위로, 아동위원회는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음.

○14세 미만이며,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42명임.

○동장추천을 받아 선발함.

○관내 유아원장, 독서실 실장 기타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모범청소년은 각 동별 2명씩 선발되었고, 내년 12월에 선발함.

○표창 및 각종 행사시 최선을 다하여 예우를 하겠음.

○현재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5. 討論 要旨

○천상옥 위원회 수정 동의안 채택

6. 修正案의 要旨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회협의회의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조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수정

7. 審査結果: 수정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회협의회의
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1995. 2.20.

발 의 자: 천상옥위원
외 3 인

1. 주 문

본 조례 규정중 아동복지법 제7조 제2항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를 수정함.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7조 제2항중 “아동위원은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담당구역을 정함에 따라 조례규정이 법을 기속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수정함.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회협의회의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1995. 2.20.

발 의 자: 천상옥위원
외 3 인
(찬성자서명: 별첨)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7조 제2항중 “아동위원은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담당구역을 정함에 따라 조례규정이 법을 기속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수정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회협의회의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조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수정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1월 19일

다. 상정일자: 제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 2. 20):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이성세)

가. 제안이유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의 차등 수수료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결핵치료사업을 수행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약의 조합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정금액(2,000원)으로 징수토록 규정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 현재 보건소에서 초치료인 경우는 수수료 2,600원 상당 처방 2가지, 재치료인 경우는 1,800원 3,400원, 2,400원 3가지 처방을 주로 쓰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음(약 500원 상당)

- '95년도 예산에는 수수료 수입으로 2,080,000원(1,600원×1,300명)이 계상되어 있으나 세입 차질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수가조례 개정으로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민원 소지제거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없음

5. 討論 要旨

- 정창희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 채택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12월 20일

다. 상정일자: 제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 2. 20):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김현식)

가. 제안이유

-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은 조례 뒷받침없이 개별법 규정에 의거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 설치장소, 유지관리 기준을 두며 시설개선 미이행 및 유지관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하고,

- 기존 공중화장실은 2년 이내에 현 시설기준대로 개선토록 부칙규정을 둠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 본조례(안) 부칙에서 기존 공중화장실 중 본조례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2년 이내에 개선토록 규정한 바 본조례(안) 제15조의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30일임에 비추어 2년 유예기간은 너무 많은 기간을 허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본 부칙규정에 의거 개선되어야 할 화장실 개소 수와 개수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함.

-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게 본조례(안) 제12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개방 화장실 운영 실태와 보조금 집행이 있었는지 또 지금 요청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보조금 집행 규모 등의 판단자료)와 관련예산의 반영 유무 등에 대한 검토

- 제16조3항의 유료화장실 1회 사용료로 5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50원 상한선이 현실성있는 요금인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천상욱위원, 김현중위원, 박우신위원, 정창희위원, 현수한위원)

- 요금을 받는 방법은?

- 구청 및 사설화장실의 상태가 안좋은데 개선 방안은?

- 구청 및 사설 운영 현황은?

- 창신시장내 화장실의 개선 용의는?

- 요금을 50원 받는다는데 어린아동에 대한 요금 면제 용의는?

(답변자: 시민국장, 청소과장)

- 구에서 관리하는 장소는 무료이며, 유료 화장실 운영시 요금을 받고 있음.
- 앞으로 화장실문화도 조기정착 되어야 하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음.
- 구청운영은 7개, 사실은 5개가 있음.
- 개인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음.
- 현재아동들은 성숙하여 연령과악이 힘듬.

5. 討論 要旨

- 박우신위원의 수정 동의안 채택

6. 修正案의 要旨

-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회 사용시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7. 審査結果: 수정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1995. 2.20.

발 의 자: 박우신위원
외 3 인

1. 주 문

요금의 현실화를 고려, 이를 수정함.

2. 제안이유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과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를 수정함.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1995. 2.20.

발 의 자: 박우신위원
외 3 인

(찬성자서명: 별첨)

1. 제안이유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과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를 수정함.

2. 주요골자

제1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회 사용시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수정(안): 별첨

'9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審 査 報 告 書

1995. 2. 2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
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2월 15일

다. 상정일자: 제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1995.
2. 21):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우리구 행정재산의 증대인 노인정 부지 및 건물과 공동시설부지의 기부채납사항과 불필요한 재산의 처분 등으로 새로운 재산취득을 위한 재원활용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다음 페이지에 계속)

○취득

소 재 지	지 목	수 량	취득사유	비 고
명륜동 4가 206-8	대	122.3㎡	기부채납	
"	건물	69.4㎡	"	
혜화동 15-114	대	180.8㎡	"	

○매각

소 재 지	지목	수 량	매 각 사 유	비 고
명륜동 4가 206-8	대	47.1㎡	위 기부채납자에게 매각	
" 206-46	대	8.7㎡	"	
" 260-45	건물	75.58㎡	"	
수송동 80-13	대	7.4㎡	점유자 매각	
평창동 202-9	대	188㎡	인근지 매각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 기부 의사표시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저의나 배경, 향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야 하므로 현장 확인이나 이해관계자 여론 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 평창동 202-9번지 188㎡의 매각대상 재산은 맹지로씨의 취약점이 있으므로 인근지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으로 사료되며, 수송동 80-13번지 7.4㎡는 소규모 용지로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천상욱위원, 김현중위원, 정창희위원)

- 취득, 매각시기가 4/4분기인데 그 이유는?
- 혜화동 노인정 기부채납 및 매각이 구청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 입장의 의견은?
- 혜화동 노인정 기부채납 사항에서 대지는 늘어나는데 건물은 늘어나지 않음 그래서, 지하1층 구조로 기부채납 용의는?

(답변자: 재무국장, 재무과장)

○건축허가 및 신축기간이 있기 때문임.

○우리구에 실익이 있으며 불리한 것은 없음.

○관계국장과 협의하여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5. 討論 要旨: 없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

○議長 李斗鶴 羅在岩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特別市鍾路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 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5時50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朴鍾植幹事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會 幹事 朴鍾植 本委員會沈載得委員長님이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본간사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幹事 朴鍾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안건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청관계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가 '94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위탁금을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전환하고 불법주·정차 견인료 징수와 견인비용 역시 업무위임에 따라 자

치구 세출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2.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4년 1월 19일
- 다. 상정일자: 제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 2. 20):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도시정비국장 조종행)

가. 제안이유

○서울시에 귀속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부분의 제반업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소요비용중 견인수수료와 관리기능의 전환,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의 지급방법의 변경등으로 인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경비부담의 적정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위탁금,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수수료 징수,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업체 비용지급,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 적립등 신설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윤주채)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

조례가 '94.12.13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수입과 지출 구분을 추가하는 개정조례로서

○종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세입부분에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금과 주차·정차위반차량 견인에 따른 견인료를 세입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1항과 2항을 신설하고 당초 1항내지 9항을 3항내지 11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에 제5항, 6항을 신설하여 견인차량 대행비용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 재원을 세출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이현구위원, 김성찬위원, 이형술위원)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에서 주차위반이란 용어를 써야 하지 않는가?

○종로구 직영견인차와 위탁견인차는 각각 몇대인가?

○위탁견인차량을 사용하면 위탁금은 얼마를 지급하는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견인예고후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방안과 구청견인차량을 증차할 계획은?

○이면도로에 주차장 설치계획은?

(답변자: 도시정비국장, 지역교통과장)

○보도상에 정차할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직영견인차 1대, 위탁운영견인차량 5대 있음.

○견인비용 전액 지급.

○수의계약으로 개선했을 때의 문제점을 심층분석하여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음.

○견인차량을 증차하면 견인비용에 드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견인료 인상등에 따라 증차계획을 수립하겠음.

○화재시 소방차 통행이 원활하도록 질서 있게 박차를 유도하겠음.

5. 討論 要旨: (토론자: 이현구위원)

○세입 세출에 관한 조례이기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議長 李斗鶴 朴鍾植幹事!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주차장특별
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전처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일주일동안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
다.

이상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4회 중
로구의회 임시회 閉會를 선포합니다.

(15時54分 閉會)

○出席議員

李斗鶴

千相旭

李炯述

朴鍾植

林臥龍

15名

丙相浩

玄壽漢

羅在岩

朴禹信

金憲中

李憲九

玄孝善

丁昌熙

朴勸先

金成贊

이병호, 홍동서, 김대우, 진성익

